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4호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6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상주시의회 의장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모든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체계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신고대상 규정(안 제3조)
- 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제8조)
- 라. 관련정보 보호,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ywnine@korea.kr
-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054-537-7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 견	비 고